

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생년월일	
	주소(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	전화번호	
면허(협의·승인) 연월일 및 면허번호					
매립장소					
매립면적		㎡			
매립목적					
효력상실 연월일		년	월	일	
효력상실 원인					
공사 기성 공정(율)		%			
총공사비		천 원			
신청 사유				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3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매립면허관청)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예정 공정표 3. 매립공사의 공정이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이 별지에서 "매립면허관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	수수료 없음
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